



제 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4에이치 활동 대상 확대 및 목적 구체화 등〉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259호)

2025. 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4에이치 활동 대상 확대 및 목적 구체화(안 제1조)	3
2. 4에이치 활성화에 기여한 교사에 가산점 부여(안 제5조의4 신설)	19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송옥주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4. 30.

다. 회 부 일 : 2025. 5.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4에이치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농업과 환경에 대한 조기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아동부터 청년까지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학교4에이치활동은 학생들이 단체활동을 통해 협력, 책임감, 창의성을 기르는 중요한 교육적 장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지도교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 없이는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으로 단체활동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지도교사의 동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의 대상을 청소년에서 아동과 청년으로 확대하고 교육감은 4에이치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큰 교사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사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4에이치활동을 활성화하여 아동·청소년·청년을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5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1. 4에이치 활동 대상 확대 및 목적 구체화(안 제1조)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4에이치활동에 대한 지원이 현재 7세부터 39세 회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4에이치 활동 대상을 현행 “청소년”에서 “아동·청소년·청년”으로 확대하고, 동법 목적에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도모”를 추가하여 4에이치 활동 목적을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u>청소년</u> 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u>청소년</u> 의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u>이바지함</u>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아동</u> · <u>청소년</u> · <u>청년</u> ----- ----- <u>아동</u> · <u>청소년</u> · <u>청년</u> ----- ----- ----- ----- <u>이바지</u> 하고 농업과 농 <u>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함</u> -----.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촌진흥청

4에이치 활동 지원대상을 청소년에서 아동, 청년으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이를 통해 농심배양과 창조적 미래세대 육성이라는 입법취지를

분명히 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개정안에서 지원대상을 “청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후계청년농어업인법」에서 정하는 청년농업인 정의와 법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청년농업인”으로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2) 한국4-H 중앙본부

법률 적용 대상을 현실화하여 4에이치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4에이치 활동 대상을 청소년에서 어린이, 청년, 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3)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¹⁾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농업 과학화, 농민권익 신장, 복지농촌건설, 농업발전 등의 활동을 하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개정안에 대하여 4에이치 활동대상을 학생 4에이치(초등, 중등, 고등학교)·대학 4에이치(대학교)와 청년농업인이 4에이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정하는 것이므로 개정안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1) <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

- 농업인의 사회, 경제, 정치적 권익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
- 설립 시기 : 1987년 12월
- 조직
 - 중앙회-시도연합회장(17개)-시·군연합회(167개)-읍·면회(1,500개)-회원(약14만명)
- 5대 지표
 -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 화합·단결하는 조직 ○ 농정개혁과 농권실현
 - 통일농업시대의 개척 ○ 세계속의 농업경영인
- 역점 사업
 - 회원 및 조직 재정비를 통한 조직역량 강화
 - 농업회생 촉구를 위한 대선 대응활동
 - 조합장 공명선거 운동 및 지속적인 협동조합 개혁운동
 - 자유무역 협상 진행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활동

※ 자료 :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농촌지원과 제출(2025. 6. 13.)

다. 검토의견

1) 입법 배경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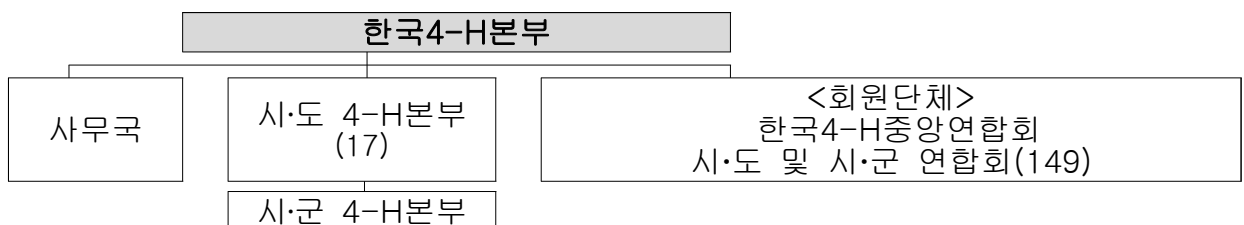
① 4-H 활동 개요

4에이치활동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에 입각하여 청소년의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하려는 활동임²⁾.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4에이치법’)」을 근거로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주관단체로 지정받은 한국4에이치 본부³⁾는 학생, 대학, 청년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영농기술교육 등 교육훈련 실시, 전국학생 모의국회, 야영교육·경진대회 등 개최, 국제 교환 운영을 통한 국제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2024년 12월 기준 한국4에이치에 소속된 조직은 1,160개 지회, 회원의 규모는 48,716명에 이르고 있음.

【 한국 4에이치 조직 】



※ 자료 :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농촌지원정책과 제출(2025. 6. 13.)

2) 4-H운동은 1900년대 초 미국에서 시작되어 1947년 3월 당시 경기도 초대 지사 구자옥과 4-H출신 군사고문관 앤더슨 대령의 요청으로 처음 시작

3)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한국 4에이치 개요 】

□ 연 혁

- 1954. 11 창립(당시명칭 : ‘한국4-H구락부 중앙위원회’)
- 1963. 04 4-H국제교환훈련 실시 및 ‘한국4-H신문’ 창간
- 1974. 02 ‘한국4-H연맹’ 으로 개칭
- 1979. 02 ‘한국새마을청소년후원회’ 로 개칭
- 1988. 10 ‘한국4-H후원회’ 로 개칭
- 2001. 02 ‘한국4-H본부’ 로 개칭
- 2005. 한국클로바동지회·한국4-H연맹이 한국4-H본부로 통합
- 2008. 12 4-H활동지원 주관단체로 지정
- 2024. 12 ‘한국4-H중앙본부’ 로 개칭

□ 조직 및 회원현황

- 한국4-H 규모 : 1,160개회, 48,716명 * 4-H운동 시작 : 1947년
 - 한국4-H본부: 17개회 시도본부(9,167명, 164회)
 - 회원: 청년농업인 148회(8,797명), 대학 22회(1,399), 학생 826회(29,353)
 - 본부 기구·임원(중앙, 도, 시군본부 회원)
 - 임 원 : 29명(회장 1, 부회장 3, 이사 23, 감사 2)
 - ※ 모든 이사는 비상근명예직, 임기 3년, 연임가능(단, 회장은 단임)
 - 대의원 : 178명(사·도·군4-H본부 대표, 4-H단체대표, 후원회원 등)
 - 상근직원 : 9명(사무부총장 1명, 부장 2, 직원 6)

□ 기능

- 「한국4에이치 활동지원법」(’07.12 제정)에 따라 주관 단체로 지정받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4-H육성사업을 수탁 수행

□ 주요 활동 내용

- 교육훈련 : 농심함양 및 영농기술교육, 지도력배양교육 등
- 시민교육 : 전국학생모의국회, 대학생(청년)국회토론회 등
- 교육행사 : 청소년의 달 행사, 야영교육경진대회(격년), 한마음대회 등
- 회의생활 : 총회(연시·연말), 운영위원회, 임원회의 등
- 국제교류 : 국제교환운영, 글로벌4-H네트워크 활동, 국제행사 등
- 기타활동 : 회지발간, 불우이웃돕기, 농산물 판매사업, 환경 가꾸기 등

※ 자료 :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농촌지원정책과 제출(2025. 6. 13.)

「4에이치법」은 농촌진흥청이 농촌지도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해 온 “한국 4-H단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7년 제정되었음.

2007년 당시 어려운 농업·농촌의 여건 하에서 민간기구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4에이치 운동을 지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4에이치법」이 제정되었음⁴⁾.

이 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4에이치 활동 주관단체로 지정받은⁵⁾ 한국4-H 본부는 청소년의 농심 함양을 통해 농업·농촌의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청년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리더 육성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음.

2007년 법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제1조(목적) 규정은, 1947년부터 60여년간 추진되어 농촌 근대화에 크게 기여해 온 농촌 청소년운동(4에이치운동)을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음.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4)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한국4에이치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73130) 검토보고서
- 5)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4조(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농촌진흥청장은 4에이치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비영리법인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1.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2. 전문인력과 교육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최근 1년 이상 전국적인 규모의 4에이치활동 지원실적이 있을 것

② 농촌진흥청의 4-H 활동 지원

제3조(4에이치활동 시책의 수립)⁶⁾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장은 4에이치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3조(4에이치활동 시책의 수립) ① 농촌진흥청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2008년 <한국 4-H 활동 지원 기본시책>을 제정하였고, 2011년 1차 개정, 2017년 2차 개정을 한 바 있음.

4에이치 활동 관련하여 최초 4에이치 회원 연령은 기존 10세~20세였으나, 1980년 만 13~29세로 조정된 이후 2001년 만 9~29세로 조정하였고, <한국4-H활동 지원 기본시책> 개정을 통해 2011년에 만 9~34세로, 2018년에 만 7~39세로 각각 조정하였음.

【 4에이치 회원 연령 조정 과정 】

년도	회원 연령	근거
1952년	10세 ~ 20세	이사회에서 연령기준을 정함
1963년	13세 ~ 24세	
1981년	13세 ~ 29세	
2001년	9세 ~ 29세	
2011년	9세 ~ 34세	한국 4-H 활동 지원 기본시책 개정
2018년	7세 ~ 39세	

※ 자료: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농촌지원정책과 제출(2025. 6. 13.)

6)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3조(4에이치활동 시책의 수립) ① 농촌진흥청장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연령 조정 과정을 거치며 한국4-H본부의 주요 사업 내용도 확대되었고, 연령과 학업여부에 따라 ① 초·중·고등학교 학생 4에이치(7~18세), ② 대학 4에이치(19~29세), ③ 청년농업인 4에이치(19~39세)로 연합조직을 구분하여 활동하고 있음.

학생 4에이치 회원에 대하여는 전국 학생 4에이치 과제 경진대회, 전국 학생 모의국회, 전국 학생 4에이치 연합회 중앙위원 리더십캠프 등을 통해 건전한 민주시민·차세대 리더 양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대학 4에이치 회원에 대하여는 일반대학·농과계 학생들 대상으로 전국 대학 4에이치 리더십캠프, 농산업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리더십을 갖춘 인재, 농업후계인력 양성 등을 목표로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청년농업인 4에이치 회원에 대하여는 청년농업인 정책토론, 전국 농업 경진대회 등을 통해 전국 청년농업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인력 후계인력을 양성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한국 4에이치 활동 성장단계별 구분 및 주요 프로그램 】

□ <한국 4에이치 활동 지원 기본시책>에 따른 4-H 회원 성장단계별 구분과 활동목표 및 연합조직

성장단계	4-H활동조직		활동 목표	연합조직
학생4-H (7~18세)	초등4-H(동아리) 중등4-H(동아리) 고등4-H(동아리)	⇒	배우고 실천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청소년	학생4-H연합회
대학4-H (19~29세)	대학 및 지역 4-H회(클럽)	⇒	창의적 청년리더	대학4-H연합회
청년농업인4-H (19~39세)	청년농업인.일반4-H회 4-H연합회	⇒	농업·농촌을 이끌어 가는 청년농업인	시도4-H연합회 청년농업인연합회

□ 주요 프로그램

○ 학생 4에이치 회원 육성

- (주요 프로그램) 전국 학생4-H과제경진대회, 전국 학생 모의국회 및 모의 법률 제·개정안 공모대회, 전국 학생4-H연합회 중앙위원 리더십캠프 등

○ 대학 4에이치 회원 육성

- (주요 프로그램) 대학4-H리더십 캠프, 청년 미래비전토론회, 농촌일손돕기, 농산업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 청년 4에이치 회원 육성 * 정부부처·지자체 청년정책 위원 등 다양한 활동 추진

- (주요 프로그램) 청년농업인 정책토론, 전국 농업경진대회, 소비자 활동 프로그램, 해외 협력사업 등

육성단계	활동목표	주요활동과제
 유소년 (초등) 만 7~12세	▶ 4-H덕목 함양 ▶ 리더십 함양 ▶ 인간 / 환경 / 농업 및 자연 친화적 태도 형성	▶ 4-H인성교육 ▶ 동식물기르기 ▶ 도농교류체험 ▶ 과제학습과 교육행사
 청소년 (중고) 만 13~18세	▶ 4-H활동을 통해 배우고 실천하는 건강한 청소년 ▶ 청소년리더십 배양 및 자연·인간·농업·농촌에 대한 사랑의 실천	▶ 인성/진로교육 ▶ 도농교류체험 ▶ 과제학습과 교육행사 ▶ 국제교류
 대학4-H 만 19~29세 대학재학 청년	▶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농업과 국가를 이끌어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청년리더로의 성장	▶ 인성/진로교육 ▶ 도농교류 및 농촌봉사 ▶ 과제학습과 교육행사 ▶ 국제교류
 청년농업인 만 20~39세	▶ 전문농업경영인 양성 ▶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청년지도자로 성장	▶ 리더십과 인간관계훈련 ▶ 농업전문교육 ▶ 지역사회활동과 4-H활동지도 ▶ 국제교류

○ 75개국 4에이치 글로벌 협력 및 교류 * 75개국 글로벌 4-H 부의장(한국)

- (주요 프로그램) 4-H 국제교환 프로그램, 4-H 한·미 청소년교류 프로그램, 미국공립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 75개국 글로벌 캠프, 아시아4-H컨퍼런스 등

* 개최현황(한국): 국제 글로벌 대회(1회, '14), 아시아 대회(1회, '12), 글로벌 청소년 대회('18)

※ 자료 :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농촌지원정책과 제출(2025. 6. 13.)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4-H본부 및 지방자치 단체에 대하여 청소년과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 운영비 등으로 지원해 왔으나(2023년 12억 200만원 지원), 동일한 단체에 대하여 5년 이상 관행적인 예산을 지원해온 사업에 대한 재정당국의 사업 정비에 따라 2024년 4에이치 단체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2025년까지 미편성되고 있음.

【 한국 4에이치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21~'25년) 】

(단위 : 백만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합계	1,044	1,202	1,202	-	-
(사)한국4-H본부	524	682	682	-	-
지방자치단체	520	520	520	-	-

※ 자료 :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농촌지원정책과 제출(2025. 6. 13.)

※ 한국 4-H 본부로 지원한 예산은 학생 4-H, 대학 4H, 중앙연합회의 교육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으로 볼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로 지원한 예산은 농촌진흥청이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지자체에 편성·집행한 예산을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도나 시군연합회에서 수행하는 교육 운영비 등에 대하여 지원한 것임.

2) 검토의견

① 총괄검토

개정안은 <한국4-H활동 지원 기본시책>과 현재 4에이치 활동의 실제 활동을 반영하여 동 법의 목적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활동 지원 대상을 현행법에 따른 ‘청소년’에서 ‘아동, 청소년, 청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법의 목적 규정에서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4에이치활동은 ① 초·중·고등학교 학생 4에이치(7~18세), ② 대학 4에이치(19~29세), ③ 청년농업인 4에이치(19~39세)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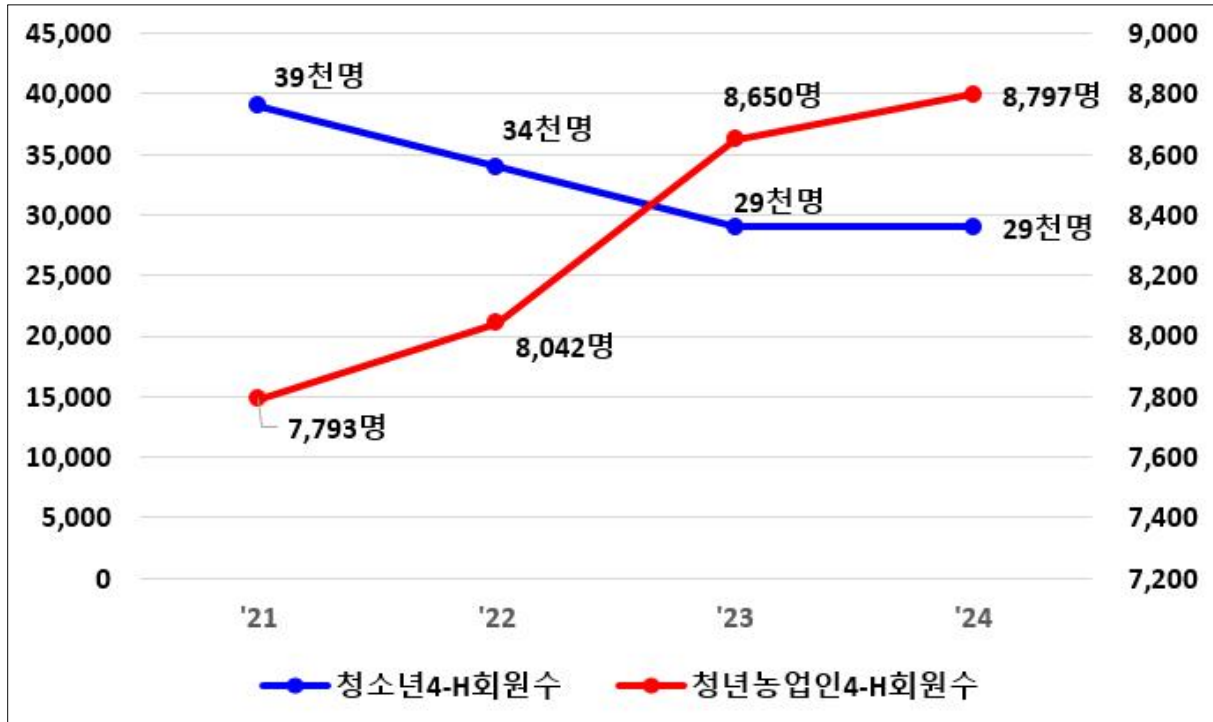
농촌진흥청은 <한국4-H활동 지원 기본시책>을 근거로 4에이치 활동 대상을 확대한 것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4에이치 운동은 농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리더십 활동에 초점을 두어 왔으나,

농촌 고령화와 도시로의 인구 유출로 인해 농촌 청소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청소년’에 국한해서는 4에이치 활동의 조직 활성화나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형성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청소년 4에이치 회원수는 ('21) 39천명 → ('22) 34천명 → ('23) 29천명 → ('24) 29천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청년농업인 4에이치 회원수는 ('21) 7,793명 → ('22) 8,042명 → ('23) 8,650명 → ('24) 8,797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청년농업인[실제 농업에 종사(농업경영체 등록)하는 40세미만의 경영주]은 통계청 총조사 결과('20년 기준) 1만 2천명인데, 그 중 75%인 9천명이 청년 4에이치 회원으로 육성되고 있음.

【 청소년4-H 및 청년농업인4-H 회원수 증감 현황 】



※자료 :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농촌지원정책과 제출(2025. 6. 13.)

개정안은 저출생·고령화를 감안하여 청년(청년농업인)까지 4에이치 활동 범주에 포함함으로써 농촌지역의 활동 기반을 넓히고 지역사회 활동 역량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그러나, 법의 목적 조항에서 4에이치 활동 대상 및 지원 범위를 ‘청년(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하려는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지난 70년간 이어온 ‘농촌 청소년 운동’ 지원을 통한 창조적 미래세대 육성이라는

현행법의 목적과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기후변화·고령화·청년 이탈·농촌 인구 감소·국제 식량 시장 변동성 등 다양한 도전 과제가 농업·농촌을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현행법의 목적으로 추가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 내용의 개정안[의안번호 제2204917호, 이만희의원안(‘24.10.)]이 발의되어 현재 농림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임.

② 아동, 청소년, 청년의 기준 검토

한편, 개정안이 규정하려는 아동, 청소년, 청년에 대하여 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근거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아동복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아동에 대한 각종 지원의 근거 법률은 ‘아동’을 평균적으로 “18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아동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

아동 관련 법률		연령
아동	아동복지법	만 18세 이하
	가정폭력방지법	만 18세 이하
	아동학대처벌법	만 18세 이하 (아동복지법을 따르도록 규정)
	한부모가족지원법	18세 미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만 18세 미만
	입양특례법	18세 미만인 사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만 18세 이하 (아동복지법을 따르도록 규정)
	국제입양에 관한 특별법	만 18세 이하 (아동복지법을 따르도록 규정)

※ 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심사 소위자료(2024.11.)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의 권리 증진, 복지 향상, 사회 참여 확대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는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같이 정책 지원의 대상을 규정하는 법에서는 청소년을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유해 환경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의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은 청소년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 청소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

청소년 관련 법률	연령 기준
청소년기본법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음)
청소년보호법	만 19세 미만인 사람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기본법에 따름(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농약관리법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담배사업법	
마약류관리법	
게임산업진흥법	
대중문화산업법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	연령 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19세 미만의 사람
다문화가족지원법	“아동·청소년”: 24세 이하인 사람

※ 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심사 소위자료(2024.11.)

청년의 기준 역시 각 법률의 목적마다 상이한데, 청년 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청년기본법」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 밖에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려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청년을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려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청년을 “39세 이하”로 정하고 있음.

농어업 분야를 살펴보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후계청년농어업인법”)」은 청년농업인을 “4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 청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

청년 관련 법령		연령 기준
청년기본법		19세~34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대통령령 위임
	시행령	40세 미만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후계농어업인법을 따르도록 규정, 40세 미만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법률	대통령령 위임
	시행령	원칙: 15세~29세 공공기관·지방공기업 : 15세~34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대통령령 위임
	시행령 (청년상인)	39세 이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15세~34세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법률	대통령령 위임
	시행령 (청년창업자)	39세 이하
고용보험법 시행령(청년실업자)		15세~34세
통계청(청년실업률)		15세~29세
※ 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심사 소위자료(2024.11.)		

<한국4-H활동 지원 기본시책>에 따르면, 실제 4-H 활동의 대상이 되는 연령대가 7세부터 39세까지임.

이를 감안하면, 개정안과 같이 동 법의 활동 및 지원 대상을 “아동(18세 이하), 청소년(만 19세 미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 15세 이상 29세 이하, 39세 이하)으로 규정할 경우 현재 실제 4-H 활동의 대상이 되는 연령대와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특히, 연령 및 성장 단계별 개념을 연속성 차원에서 살펴보자면, 아동(Childhood) 시기 이후 청소년(Adolescence), 그리고 청년(Youth)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바,

제도·정책·법률 등 공적·공식적 맥락에서 ‘청소년’, ‘청년’과 맞물려 활용하기에 ‘아동’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계층 구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의 ‘아동’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만, <한국4-H활동 지원 기본시책>에 따른 4-H회원 구분과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성장 단계별로 학생, 대학, 청년농업인으로 구분하여 활동하고 있는바,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4에이치법」 제정 취지(2007)’ 및 <한국 4-H활동 지원 기본시책> 등 현재 4에이치 활동 대상과 부합하도록 안 제1조의 “아동·청소년·청년”을 “아동·청소년·청년농업인”으로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4에이치 활성화에 기여한 교사에 가산점 부여(안 제5조의4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4에이치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큰 소속 교사에게 관할 구역의 교육감이 상훈을 수여하거나 해당 교사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4(가산점 부여에 대한 특례) <u>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에</u> <u>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서 4에</u> <u>이치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큰</u> <u>소속 교사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u> <u>소속 교사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u> <u>점을 부여할 수 있다.</u>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촌진흥청

학교 교육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와 미래 세대를 양성하는 것은 농산업과 농촌문화를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의미

에서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4-H활동 독려와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
에 대해서는 학생관리와 자기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여 근거 마련은 시의적절함.

2) 교육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8조2에 따르면 해당 교사의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태도를 바탕으로 근무성적평정을 부여하는데 학교밖 활
동으로 해당 평정점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각종 청
소년단체 관련 법률에도 구체적으로 교사의 승진가산점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한 사례가 없는바,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다. 검토의견

교육공무원에 대한 가산점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⁷⁾ 및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대통령령 제33528호) 제41조⁸⁾에 따라 부여됨.

개정안은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교육감이 4에이치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큰 소속 교사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4-H활동 독려와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4-H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7) 「교육공무원법」

제13조(승진)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

8)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가산점) ① 교육공무원으로서 해당 직위에서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산점이 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명부작성권자가 제40조에 따른 각 평정점의 합산점수에 가산점을 더하되, 전직을 한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은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후의 가산점만을 말하며, 교육전문직원은 교감등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만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② 가산점은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구분한다.

③ 공통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시범·실험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18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6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교육공무원으로 재외국민교육기관에 파견근무한 경력은 월 0.015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5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0.5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연수중 동 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이수실적이 학점으로 기록·관리되는 경우에는 1학점당 0.02점. 이 경우 명부작성권자는 0.12점의 범위안에서 학년도별 상한점을 정할 수 있고, 1점의 범위안에서 가산점의 총합계를 정할 수 있다.

4. 교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 관련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1항에 따라 교육감이나 그 밖의 명부작성권자가 부여하는 가산점 0.1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상담

나. 학교폭력 발생 점검 및 실태조사

다. 학교폭력 대응 조치 및 사후관리(이하 생략)

현재 초·중·고교에서 4-H 지도교사로 활동중인 교사는 1,476명으로, 전체 초·중·고교 교사 440,814명⁹⁾의 0.33%에 해당함.¹⁰⁾

개정안과 같이 4-H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큰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경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4-H활동의 활성화 및 농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이는 미래 농업인력 양성 및 환경 감수성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외한 다른 개별법에서 교사의 근무성적 평정 가산점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2항은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4-H 활성화에 기여한 행위’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9) 2024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10) 참고자료 (p 24.) 참조

기여한 바가 큰 행위'와 비교 시 교사로서 동일한 수준의 평가를 받을만한 행위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4-H 활동 외에 교사가 지도 및 감독하는 교육활동 중 상훈 또는 근무성적 평정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 일선 교육현장에서 이에 대한 형평성 차원의 문제 제기가 발생할 수 있는바, 현실적으로 모든 교육활동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4-H 지도교사 현황

[2024.12.31. 기준]

구 분	초	중	고	기타	소계
경 기	76	96	110	17	299
강 원	50	28	40	0	118
충 북	10	63	33	0	106
충 남	66	71	73	10	220
전 북		28	37		65
전 남	32	58	42	17	149
경 북	3	69	75		147
경 남	16	59	67	0	142
제 주	0	40	24	0	64
서 울	7	8	15		30
부 산		5	9		14
대 구	14	12	5	0	31
인 천	0	24	12	0	36
광 주		4	4		8
대 전		6	3		9
울 산	22	3	10		35
세 종	1		2		3
소 계	297	574	561	44	1476

※ 기타 : 보육원, 특수학교 등

※자료 :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농촌지원정책과 제출(2025. 6. 13.)

문 의 처

02)6788-5426
